

[단양] 2025년 사랑의 집수리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1. 사업목적

- 충주댐주변지역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하여 생활환경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2.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 업 명	• (단양) 2025년 사랑의 집수리 지원사업
사 업 내 용	• 충주댐 주변지역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가구의 집수리를 시행하는 사업 (세부사항은 「2025년 사랑의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참조)
사 업 기 간	• 2025. 7. ~ 12. (약 6개월)
예 산 액	• 총 30,000천원
제 출 서 류	• 공모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유사사업 실적 1부, 청렴서약서 1부 • 법인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필요시 기타 증빙자료 1부
제 안 서 접 수	• 접수기한 내 우편 및 이메일 제출
이메일 및 우편주소	• 이 메 일 : ljj3838@kwater.or.kr • 우편주소 : 충북 충주시 계명대로 215 * 연락처 : 043-870-4221~4222

3. 수행기관 선정

구 분	내 용								
참가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양군 소재 사회적기업,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또는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법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 사회적기업, 기타 비영리법인 								
제안서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수행능력 평가표의 4개 항목(총 100점) 평가하여 합산점수 60점 이상인 기관 중 최고득점인 기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기관 단독 참여시에는 80점 이상 시 선정 • 참여기관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심사위원, 심사결과 등 심사 관련 세부 정보는 비공개 원칙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평가) 20점(최근 3년간 유사 사업수행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실적 1회 이상 있을시 20점, 없을시 10점 • (정성평가) 80점(사업계획서 평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평가항목</th> <th>기관의 적정성</th> <th>사업운영 역량</th> <th>사업세부 운영계획</th> </tr> </thead> <tbody> <tr> <td>점 수</td> <td>20점</td> <td>20점</td> <td>40점</td> </tr> </tbody> </table> <p>※ 제출서류 중 허위제출서류 포함시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행 기관 선정 이후라도 허위 제출 확인시 수행기관 선정 취소</p>	평가항목	기관의 적정성	사업운영 역량	사업세부 운영계획	점 수	20점	20점	40점
평가항목	기관의 적정성	사업운영 역량	사업세부 운영계획						
점 수	20점	20점	40점						

4. 유의사항

허위자료 제출, 사업 미이행, 법규 위반시 사업중단 및 제재

※ 제재대상 사례

- 제안서, 증빙 및 요구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 기관이 제출하여 승인한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및 집행내역의 증빙·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 관련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기관의 사회적 명예실추로 공사 이미지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경우

→ 향후 K-water 관련 사업 공모 참여 자격 제한

5. 추진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제 안 서 접 수	♦ 2025. 06. 19.(목) ~ 2025. 06. 27.(금)	9일
제 안 서 심 사	♦ 2025. 06. 30.(월) ~ 2025. 07. 08.(화)	9일
심 사 결 과 발 표	♦ 2025. 07. 09.(수)	
협 상 및 협 약 체 결	♦ 2025. 07. 10.(목) ~ 2025. 07. 11.(금)	

* 상기 일정은 우리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통보 예정

※ 붙임자료(각종서식)

[붙임1] 수행기관 모집 공고문 1부

[붙임2] 위탁계약서 1부

[양식1] 공모신청서

※ 접수기간 마감일 기준 자격요건 판단

(단양) 2025년 사랑의 집수리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성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 관련	법인명
					등록일
신청자 성 명		전화번호		법인 성격	<input type="checkbox"/> 공공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비영리
<input type="checkbox"/> 민간					

2025년 K-water 사랑의 집수리 지원사업 성실히 수행하고자 수행기관 공모 신청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의 허위나 조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K-water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서식1>
2.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1부 <서식2>
3. 청렴서약서 1부 <서식3>
4. 법인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5. 기타 증빙자료 1부(필요시)

[서식1] 사업 계획서

(단양) 2025년 사랑의 집수리사업 계획서

- 설립 목적
- 수행기관 직원현황 및 조직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세부 추진계획
- 예산 편성 내용

[서식2] 유사사업 수행실적

최근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사업별 작성 요망

기관명 (법인명)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총 천원
추진실적	○ 연도별 사업별로 작성
사업성과	○(사업 시행으로 수혜자들의 얻은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서식3] 청렴서약서

청 렬 서 약 서

○ 공모명 : (단양) 2025년 사랑의 집수리 지원사업

본인은 위 사업의 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평가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또한 어떠한 형태로든 심사위원들에게 개별접촉을 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소 속 :

직위(급) :

성 명 : (인)

2025년도

[단양] 충주댐 사랑의 집수리 지원사업 위탁계약서(안)

사업목적	댐주변지역 저소득층 취약계층인 빈곤가정·소외가정을 대상으로 주거생활환경 시설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2025년도 충주댐주변지역 사랑의 집수리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위탁자인 K-water 충주댐지사장(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과 수탁자인 000(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 간에 동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집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	--

사업개요	위탁금액	금삼천만원정 (₩30,000,000)
	사업기간	2025. 07. ~ 2025. 12.
	사업대상	단양 4가구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사업의 범위, 예산의 지원 및 집행, 결과보고, 계약 당사자간의 책임, 계약의 효력 등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위탁기관"은 "수행기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임하고, "수행기관"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 집수리 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 사업참여자 신청 접수 및 선발에 관한 사항
- 집수리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사업참여자 인건비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예산의 결산에 관한 사항
- 기타 각조에서 정하는 사항
-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 (사업비 및 기간)

- 사업비 : 금삼천만원(₩30,000,000)
- 사업기간은 2025년 7월 ~ 2025년 12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준비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기관"과 "수행기관"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대상) "위탁기관"의 "사업"지침에 의거 선발된 4가구 내외로 한다.(협의에 따른 조정 가능)

제5조 (사업 수행) “수행기관”은 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2조에서 정한 사항 등을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예산서 그리고 “집수리 사업 지침” 등에 의거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 계획) “사업” 계획 및 예산사항은 “위탁기관”과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수립·추진하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상호 협의한 후 조정 또는 추가(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예산 집행범위) “위탁기관”이 “수행기관”에게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급한 예산은 다음과 같이 편성·지급한다.

1. “수행기관”은 사업예산(인건비 제외) 총액의 5%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을 위한 기타 행정경비(이윤포함)로 사용할 수 있다.
2. “수행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 수선공사비에는 가구당 정한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수선공사비를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예산 지급) ① 사업비는 “수행기관”의 견적을 통한 청구(자금요구서, 사업 예산서)에 의거하여 공사 진척도에 따라 순차별로 지역실정과 사업형편에 맞게 지급하되, 공사완료 가구 방문점검 후 특별한 하자가 발생치 않은 경우 “수행기관”이 지정한 예금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이 자금요구서 및 사업예산서에 의거하여 요청할 경우 예산총액을 선 지급할 수 있다.

③ “수행기관”은 사업예산을 반드시 별도 전용통장으로 관리·집행한다.

제9조 (사업예산 사용) “수행기관”은 “위탁기관”이 지급한 사업예산을 제7조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수행기관”은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 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고, “위탁기관”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관계서류 열람, 현장확인, 관련자료 제출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수행기관”의 의무)

① “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나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수행기관”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위탁기관” 근로인력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산재보험 가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증) “수행기관”은 공사완료에 따른 하자 발생에 대비하여, 하자보수 이행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수행기관”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위탁기관”의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행한다.

⑤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탁기관”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위탁기관”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행기관”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의무승계) “수행기관”의 기관장 및 대표자의 변경시에는 전임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행 및 승계한다.

제12조 (사업추진결과 제출)

① “수행기관”은 “위탁기관”이 지급한 사업예산의 집행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 내역 및 보증서류를 첨부하여 사후정산을 실시한 후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를 사업 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위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탁기관”은 제1항에 의한 사업예산의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행기관”에게 이의 보완 및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기관”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추진결과 제출)

① “수행기관”은 “위탁기관”이 지급한 사업예산의 집행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 내역 및 보증서류를 첨부하여 사후정산을 실시한 후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를 사업 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위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탁기관”은 제1항에 의한 사업예산의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행기관”에게 이의 보완 및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기관”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지·해제) ① “위탁기관”과 “수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에 의한 “위탁기관”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거나, 제11조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3. “수행기관”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탁기관”의 예산사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할 경우
5. 기타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면 “수행기관”은 그 해지 또는 해제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정산서를 10일 이내에 “위탁기관”에게 제출하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전액 현금으로 “위탁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수행기관”은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16조 (계약의 해석 등) ①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계약서의 제규정에 대하여 “위탁기관”과 “수행기관”간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②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은 “수행기관”이 실시하는 인력 투입,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적절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본 협약의 체결사항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관”과 “수행기관”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충북 충주시 계명대로 215 (연수동)
「위탁기관」 **K - w a t e r** **충주냄지사장** (인)

「수행기관」 (인)